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0
----------	-----

발의년월일 : 2015년 10월 1일

발 의 자 : 장 숙 이 의원

찬 성 자 : 이경선, 이진삼, 김혜미
황춘하, 김순길, 박경희
윤선경 의원 (7인)

1. 제안이유

법제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검토하여 지원해 주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에서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이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를 “구청장이 법률고문 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로 개정함.

(안 제8조제1항)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를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로 개정함.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 후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를 “구청장이 법률고문 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 후단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를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u>」을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u>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u>을 준용하여 지급한다.</p>	<p>제8조(고문료 등) ① ----- ----- <u>구청장이 법률고문 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u> ----- ----- .</p> <p>② ----- ----- <u>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u> ----- ----- .</p>
<p>제9조(소송수행 위임) 의장은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u>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u> 지급한다.</p>	<p>제9조(소송수행 위임) ----- ----- ----- ----- ----- . ----- <u>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u> ----- ----- .</p>